

실업급여 부정수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~제106조에 의거 구**에게 ‘실업급여 부정수급 결정 통지서’를 발송하였으나, 본인 수신 확인 불가, 주거불명(행정주소)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6. 8. 19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장



1. 건 명 : 실업급여 부정수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
2. 근 거 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, 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~제10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불임의 공시송달 명단 참조
4. 공고기간 : 2026. 8. 19. ~ 2026. 9. 1. (14일간)
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(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, 7층(분평동 BYC빌딩)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0503-8803-0667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김예주(TEL 043-229-0762)에게 연락 바랍니다.

실업급여 부정수급 결정 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: 2026. 8. 19. ~ 2026. 9. 1.)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 사유
1	구**	'82.4.28.	충청북도 영동군 (이하생략)	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	실업급여 부정수급 결정 통지 안내 - 해외체류 사실을 미신고 하고, 해외체류 기간 동안 실업인정 신청하여 구직급여 부정수급 - 부정수급 반환명령액: 1,123,360원	수취인 확인불가 및 거소 불명 등

2026. 8. 19.

대전지 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

